2024년도 결산 이사회 결과보고

1 회의 개요

① 일　　시: 2025년 2월 14일(금) 11시 ~ 12시

② 장　　소: 올림픽회관 신관 1층 144호 대회의실

③ 출석임원: 19명(재적이사 25명 중 18명) 참석

ㅇ 회　　장 : 김돈순

ㅇ 부 회 장 : 소영선, 조용구, 함세희, 박신흠

ㅇ 사 무 총 장 : 이성진(사회자)

ㅇ 이　　사 : 강태영, 김성인, 김수진, 김정미, 김지선, 나근주 문성은, 박철성, 박태웅, 오주옥, 정규오, 최인수

ㅇ 감　　사 : 최희국

④ 상정안건

ㅇ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2. 임원 사임 보고

ㅇ 심의사항

1.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의 건
2.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3. 2025년도 정기총회 및 제18대 임원선출의 건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

2 논의결과(주요내용)

(개회선언: 11시 00분)

□ 김돈순 회장 인사말씀

□ 보고사항

① 주요내용

1. 전차회의록

2. 임원 사임 보고

ㅇ 주요내용

1.전차회의록

□ 2024년도 제2차 서면이사회 회의록

ㅇ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9시 ~ 26일(화) 12시
ㅇ방법: 의견 회신(인트라넷 메일)
ㅇ성원: 재적이사 29명 중 15명 의견 회신

ㅇ 보고사항

1. 전차회의록 : **원안대로 접수**

ㅇ 심의사항

1. 2024년도 연말 선물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찬성15/재적이사29)**

2. 규약 개정(안) 보고

□ 보고사항

ㅇ 경기단체연합회 임원사임을 보고함

- 사무처 퇴사로 인한 임원 사임

□ 관련근거

ㅇ 경기단체연합회 규약 제4장(임원) 제 11조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선임임원의 임기 중 선임임원을 개선한 경우 잔여임기를 대신 한 것으로 한다.
3. 선임임원의 결원 시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차기총회에 보고한다. 단, 회장의 궐위시는 직무대행을 두도록 한다.

□ 주요내용

ㅇ 사임 임원 명단(4명)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부회장	정 해 천	대한탁구협회 사무처장	퇴사
이 사	강 동 영	대한유도회 사무처장	퇴사
이 사	이 경 호	대한파크골프협회 사무처장	퇴사
이 사	이 용 재	대한사격연맹 사무처장	퇴사

□ 심의사항

1.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의 건

① 의결주문

○ 2024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주문함

② 주요내용

○ 2024년도 주요 사업결과 및 회계 결산 보고

1 2024년도 사업 결과

구분		회 의		사 업(행 사)				종목단체
		이사회	총회	유공자 시상	체육인 대회	소통과 화합	물품지급 등	일정
계	10	2	1	1	2	1	1	2

○ 세부일정

월	구 분	일 정	행 사 명	장 소	대 상
1월	사 업	1월 16일	2024 체육인대회	서울	종목단체 직원
	사 업	1월 26일	2024 체육인대회 관련 참석자 경품 추첨	서울	종목단체 직원
3월	회 의	3월 4일	제1차 이사회	서울	임 원
	회 의	3월 25일	2024년도 정기총회	서울	연합회 회원
	사 업	3월 25일	유공자 시상	서울	종목단체 직원
5월	사 업	5월 21일	제2회 친선족구대회	서울	종목단체 직원
9월	종목단체	7월 26일~8월 11일	제33회 파리올림픽	파리	OG 종목
10월	전국체전	10월 11일 ~ 17일	제105회 전국체육대회	경남	전국체전 종목
11월	회 의	11월 25일 ~ 26일	제2차 서면이사회	서울	임 원
12월	사 업	12월 27일	전 직원 기념품 지급	서울	종목단체 직원

2 2024년도 결산

〈요약 수입·지출 예산 내역〉 (단위:원)

수 입				지 출			
관	항	목	금 액	관	항	목	금 액
전기 이월	이월	전기 이월	158,988,744	경상비	운영비	사무행정비	57,827,240
	소계①		158,988,744		인건비	급여, 퇴직적립금(기금)	48,731,460
사업 수입	회비	회비(회원)	158,600,000			급여, 퇴직적립금(자체)	31,493,713
	회의실 관리기금	대회의실	17,230,222			복리후생비	8,300,000
		중회의실	770,000		소계①		146,352,413
		소회의실	24,820,000	상조비	상조비	본인결혼	3,000,000
	소계②		201,420,222			자녀결혼	300,000
보조금	기금	행정 보조비	27,000,000			자녀출산	2,200,000
		급여 보조비	57,000,000			조의금	1,200,000
		퇴직 적립금	4,750,080			퇴직자 전별금	15,800,000
	소계③		88,750,080			본인상	1,000,000
행사 지원	특별찬조	대한체육회	12,000,000		소계②		23,500,000
		회원종목단체	2,000,000	회의비	회의비	정기총회	306,000
	소계④		14,000,000			이사회	475,000
잡수입	이자	예금이자	145,321			기타 회의비	1,374,380
	소계⑤		145,321		소계③		2,155,380
				사업비	연수회	회원 연말 선물	14,940,000
					소통과화합	종목체험	5,825,090
					체육인대회	경품구입	9,000,000
						체육인대회	4,431,750
					유공자시상	시상품 구입	4,470,000
					업무추진비	업무활동비	12,000,000
						대외활동비 및 출장비	1,740,900
					소계④		52,407,740
				기타	반납금	정산 반납금	27,004,206
					소계⑤		27,004,206
				합계			251,419,739
				차기 이월			211,884,628
총 계			463,304,367	총 계			463,304,367

③ 참석자 주요발언

○ 회장: 1호 안건에 대해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 사무 행정비하고 여기에 보니까 경상비 쪽에 한 1억 4,6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는데 2억 정도 수익이 발생됐을 시에 저희가 자체 급여와 운영비 행정비 이렇게 해서 1억 4,600만원 정도 들어간다면 남는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닌데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업무 활동비가 1200만 원 나간 상황인데요.이게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밖에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200만원이면은 이 업무 활동비가 누구의 업무 활동비인지 그리고 이게 매월 급여성으로 나간 건지 아니면은 업무 활동에 대한 증빙을 하고 나간 건지 이 부

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ㅇ 사무총장: 먼저 처음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아마 이제 올해부터 예산이 이제 대한체육회 예산이 끊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구책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체육회나 문체부 쪽에 저희가 예산을 그동안 받아왔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받으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업무 활동비 여기 1200만 원은 사무총장 활동비로 월 100만 원씩 지급이 됐었습니다.
제가 저도 이제 이게 증빙 없이 그냥 급여성으로 이제 지급이 됐었고 받아왔는데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1200만 원 월간 100만 원씩의 활동비를 받으면서 영수증 없이 지출해야 될 부분들 국회의원을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난다 등
ㅇ 회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원래 제가 한 4년 전에 회장으로 이렇게 당선되면서 사실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회의로 이제 전체 운영이 되는 부분이어서 이런 돈 집행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고 또 이런 돈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모임이나 단체가 이 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나중에 불협화음이 많이 생기는 걸 봐왔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좀 뭔가 이제 우리 연합회의 현 그러니까 보존 이렇게 그냥 사무처장의 협의회 그다음에 직원들의 노임 이 정도로 생각을 했다 그러면 그냥 그 수준으로서 이제 해왔을 건데 저는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또 우리 경기단체연합회가 좀 그동안에 이제 잘 대외적으로 좀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고 좀 파이도 좀 키워야 되겠고 제 나름대로 좀 소신을 가지고 대외활동이나 이런 걸 좀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이제 많이 좀 나왔었는데 거기에 하나 연합회의 활동 사항에 대한 지적 사항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특히 활동을 하려고 하면 지금 기존에 받고 있는 비용으로 뭘 어떻게 활동이 되겠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예전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직원들 급여를 올릴 때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을 만날 때 사실은 법인 카드를 연맹에 있는 법인카드도 제공하고 이렇게 해

서 운영을 했었는데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려고 하면 사무총장이 실질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을 토대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설명은 잘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총회에서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하자고 해서 지금 진행이 됐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우리 감사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지적사항으로 이제 아마 이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일을 이제 잘 하려고 진행을 하던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는 공식적인 감사 보고서를 통해서 다음 번에라도 그거에 근거해서 뭔가 새로운 이게 변화되거나 또 개선이 되거나 이런 방향쪽으로 가는 게 맞춤물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 지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이런 부분이 토대가 돼서 또 우리 집행부에서 또 나은 또 다른 집행부가 구성될 때 그런 부분을 잘 이관을 시켜서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자 이런 걸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 ○○○○ 이사: 그래서 제가 이제 일부 이제 몇 개 종목에 이제 직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제 연합회비로 과연 이 사무총장의 업무 활동비로 이렇게 급여성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 특히 우리 연합회는 각 종목 단체 회원들로 이루어진 단체인데 지금 종목 단체에서는 사실은 급여성으로 못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연 그걸 가지고 또 그걸 통합해서 이렇게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합당한 거냐 그리고 이제 지난 4년간 직원들의 우리의 어떤 복지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그런 변화는 없었는데 이런 게 지출됐다라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해하는 그리고 또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공지가 안 됐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르는 직원들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들으니까 조금 황당해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좀 초래됐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쉽게 이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사무총장님 앞에 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 생각에 저는 앞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규정개정위원장: 이게 지금 약간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규정 개정 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인데요.
사무처에 제가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임원의 업무 활동비가 직원의 초우 안에 정액 표나 그리고 급수별로 나가는 그 규정 안에 들어 있지 않나요?
그렇다라고 하면 다시 좀 구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해당 이 업무 추진비가 제

가 알기로는 임의적으로 이제 책정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규정에 그 표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을 규정 개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었었고 그거를 이사회를 통해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적법하게 이 예산을 잡았었던 것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회원들이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시 모르겠습니다. 이 임기가 3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차후에 개정을 통해서 의견 수렴함이 맞지 않을까 싶고요.

ㅇ ㅇㅇㅇ 감사: 제가 이제 사실 말씀 안 드리면 그냥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규정 개정을 제가 팀장한테 이거 해야 된다. 첫 번째가 회원 영업 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어떤 급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국고를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기금을 받고 있는 단체는 문체부든 대한체육회 감사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여 급여표에 들어가 있는 자체가 잘못돼 있는 거고 첫 번째가 거기에 급여를 받으면 해임 및 소지가 나옵니다. 000(종목)이 나오든 이쪽이 나오든 어쨌든 우리가 얘기하는 대한체육회 기금 운영에 있어서 안 맞는 점 겸직을 할 수는 있습니다. 회장 허락을 받고 영리활동 등 수당 보수는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급여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성이 있는 거고 첫 번째가 거기가 그리고 직원이 아닌데 급여 표에 들어가 있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ㅇ 규정개정위원장: 이게 어떤 오해의 소지보다는 체계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전에는 사무총장 선거로 뽑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고 지금 이제 회장님 이하 사무총장께서 하셨을 때는 파트너십으로 묶어서 하자 그리고 사무총장의 이제 그 개념을 직원으로 하는데 사무처장에는 포함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런 논의도 있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총장은 어느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저희가 이사회나 총회를 통해서 이미 담론을 형성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규정이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무총장이 어떠한 직을 했고 회장이 어떠한 직을 했다 하고는 지금 상황적으로 흐름이 많이 바뀐 상태에서 이게 결정이 됐다라는 점은 다시 한 번 좀 상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저는 연합회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흐름은 저희 회의록에도 이 자리에서 다 논의를 했었던 내용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이게 이사회 의결돼서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운영하고자 하면은 25년도 사업 계획 예산안에 편성할 때

다시 논의하는 게 좋겠죠.
ㅇ 회장: 조금 전에 이제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 또 감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그다음에 이제 규정 개정 위원장께서 이제 부연 설명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조금 전에 이제 규정 개정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이 제도는 어쨌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요식 절차를 거쳐서 승인돼서 진행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집행부에서 다시 이 문제가 좀 합당하지 않고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또 이사회나 총회를 거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절차상으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충분히 지적하실 만한 얘기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차 개선해 나가고 다음 집행부에 위임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ㅇ ㅇㅇㅇ 이사: 2024체육인대회 4,431,750원에 대해 예산수립이 안되있는 부분과 지출세부내역이 있을까요
ㅇ 사무총장: 대한체육회 특별찬조금 1,200만원으로 돌려받았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 당시 현수막 제작 등 직접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으니 경기단체연합 노동조합에서 먼저 집행하고 연합회에서 보전을 해준 상황입니다.
ㅇ 회장: 2024체육인대회 관련 세부내용은 ‘ㅇㅇㅇ이사’ 님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④ 논의결론: 원안대로 의결

2.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안) 심의 건

① 의결주문

ㅇ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주문함

② 주요내용

ㅇ 2025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1 2025년도 사업 계획

구분	회 의			사 업(행 사)		종목단체
	이사회	총회	임원선출	워크숍	소통과 화합	일정
계	3	1	1	3	4	3

ㅇ 세부일정(안)

월	구 분	일 자	행 사 명	장소	대 상	비고
2월	종목단체	2월 7일 ~ 14일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	하얼빈	동계 AG 종목	
	회 의	2월 14일(금)	제1차 이사회	서울	임 원	
	종목단체	2월 18일 ~ 21일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강원	동계 종목	
3월	사 업	미정	사무처장 워크숍	미정	사무처장	
	회 의	미정	2025년도 정기총회	서울	연합회 회원	
	임원선출	미정	제18대 임원선출	서울	연합회 회원	
	사 업	1분기	소통과 화합	서울	종목단체 직원	
4월	사 업	2분기	소통과 화합	서울	종목단체 직원	
5월	회 의	미정	제2차 이사회	서울	임 원	
6월	사 업	미정	워크숍 및 하계연수회	미정	종목단체 직원	
7월	사 업	3분기	소통과 화합	서울	종목단체 직원	
10월	전국체전	10월17일 ~ 23일	제106회 전국체육대회	부산	전국체전 종목	
	사 업	4분기	소통과 화합	서울	종목단체 직원	
12월	회 의	미정/1일	제3차 정기이사회	서울	임 원	
	사 업	미정	워크숍 및 동계연수회	미정	종목단체 직원	

2 2025년도 예산(안)

<요약 수입·지출 예산 내역> (단위: 원)

수 입				지 출			
관	항	목	금액	관	항	목	금액
전기이월	이월	전기이월	211,884,628	경상비	운영비	사무행정비	35,102,500
	소계①		211,884,628		인건비	급여, 퇴직적립금(기금)	0
사업수입	회 비	회비(회원)	165,000,000			급여, 퇴직적립금(자체)	102,548,583
	회의실	대회의실	20,000,000			복리후생비	9,800,000
		소회의실	25,000,000		소계①		147,451,083
	소계②		210,000,000	상조비	상조비	본인결혼	3,000,000
보조금	기금	행정보조비	0			자녀결혼	1,500,000
		회의실운영	0			자녀출산	2,000,000
		급여보조비	0			조의금	2,000,000
		퇴직적립금	0			퇴직자전별금	22,000,000
	소계③		0			상조기 설치	1,000,000
행사지원	특별찬조	대한체육회	0		소계②		31,500,000
		종목단체	0	회의비	회의비	정기총회	2,000,000
	소계④		0			이사회	2,000,000
잡수입	이자	결산이자	150,000			기타 회의비	2,000,000
	소계⑤		150,000		소계③		6,000,000
				사업비	연수회	워크숍	0
						회원 선물 구입	15,000,000
					화합 한마당	소통과 화합한마당	12,000,000
					업무추진비	임원 업무활동비	12,000,000
						대외활동비 및 출장비	2,000,000
						대관업무	0
					소계④		41,000,000
				기타	예비비	예비비(기금, 자체)	10,000,000
					소계⑤		10,000,000
				합 계			235,951,083
				차기이월(25.12.31)			186,083,545
총 계			422,034,628	총 계			422,034,628

③ 참석자 주요발언:

○ 사무총장: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새로운 집행부가 해야 될 역할일 것 같은데요. 우선은 형식적으로나마 25년도 사업 계획 예산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24년도에서 25년으로 이월된 2억 1188만 4628원을 포함해서 회의비 회의실 관리비 총 2억 115만 원의 수입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어떤 사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작년 기준으로 지출 계획을 세웠는데 2억 3595만 1083원을 집행하고 차기 유월금으로 1억 86 8만 3545원의 지출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얘기 나온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제가 사무총장으로 와서 저희가 재정이 항상 그전에 보면요. 과거 선배님들이 제로로 넘기셨어요. 이월금이 거의 제로였습니다. 회비를 다 소진하고 재료로 넘겼고 재료로 넘겨왔는데 제가 처음에 사무총장 됐을 때 보다 지금 이월금이 처음에 5천만 원 정도로 제가 만들었고요. 그리고 계속 매년 이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 현재는 올해 2억 1천만 원까지도 이제 이월금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행사를 안 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대한체육회와의 어떤 관계를 통해서 저희 연말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용으로 다 지출하던 것들을 대한체육회에서 8천만 원씩 지원받고 연간 1억 이상 또 별도로 지원받고 이런 행위들을 통해서 연합회를 키워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활동비 부분은 과거에 휴대폰 요금비라고 해서 한 30만 원씩 20년 전에 그렇게 지급이 되던 거였는데 이거를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지난 이사회에서 다들 승인해 주셔서 이제 회장님 활동비와 사무총장 활동비 이게 이제 시설이 됐던 부분이었는데요. 저는 그만큼 이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제는 대한체육회 예산이 이제 중단이 되고 직원 회비로만 이렇게 운영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크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 아닌 이제 다른 사무총장이 온다고 하더라도 직원급이나 사무처장급에서 이런 업무를 대외 활동을 하는 데 어떤 비용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연합회 법인카드를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이사님들께서는 이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같이 공감을 해 주시고 그런 얘기가 나오면 좀 같이 이렇게 하나 된 방향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기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예산을 다시 수립하면 되니까요. 그때 가서는 다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5년도 예산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ㅇ ㅇㅇㅇㅇ이사: 방금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다만 사무처가 그전까지는 움직여야 되는 이상이기 때문에 그전까지 움직이는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차기 집행부로 넘기는 거에 대한 부대 의견입니다.
ㅇ ㅇㅇㅇㅇ이사: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차기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그쪽에 위임하는 걸로 하고 그전에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은 현 예산

에서 최소한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④ 논의결론: 차기 집행부에 위임, 단 차기 집행부 구성 전 원안 내에서 예산운영 의결

3.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제18대 임원선출의 건

① 의결주문

ㅇ 2025년도 정기총회 개최 및 제18대 임원선출의 건을 심의·주문함.

② 주요내용

1 2025년도 정기총회 개요

- 일　　시 : 2025년 3월 내
- 장　　소 : 미정(대면/비대면)
- 참석대상 : 경기단체연합회 회원**※총회 성원 60명**
- 안　　건

보고사항	심의사항
1. 전차회의록 보고 2. 감사보고 3. 2025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 보고	1. 2024년도 사업 결과 및 결산 심의 건 2. 제18대 임원 선출

2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제18대 임원선출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직전선거 일정)
장 소	미정(대면/비대면)	줌/온라인 투표
일 시	2025년 3월 내	d-day / 23.03.29
선출인원	회장 / 감사(2)	
개최공고	d-16	d-21 / 23.03.08.
선거권	종목별 6인 이하	전체회원
후보등록	d-7~d-6	d-7~d-6 / 23.03.22.09‘ ~ 23. 17’
후보공고	d-6	d-6 / 23.03.23.18:00
선거인명부열람	d-5	d-5 / 23.03.24.09‘ ~ 18’
선거운동	d-5~d-1	d-5~d-1 / 23.03.24. 09’ ~ 28. 17’

③ 참석자 주요발언: 없음

④ 논의결론: 정기총회 일정 및 제18대 임원선출 일정 회장에게 위임

4.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건

① 의결주문

ㅇ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을 심의·주문함.

② 주요내용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규약

제12조(선출방법)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회장, 감사는 후보자 재직종목의 정년 기준의 잔여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의 자 중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되, 감사는 사무처장과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 중에서 각 1인을 선출한다.

1-2.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3.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1-4.후보자가 1인인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라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제1항에 따른 회장선출기구는 회원 종목별 6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3.임원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기능) 총회는 연합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규약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보고,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기타 주요사항

제26조(위원회 구성) 1. 연합회 사업수행을 위해 이사회 승인을 얻어 동호, 상조, 홍보, 권익, 여성 등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참석자 주요발언

ㅇ ㅇㅇㅇ 이사: 연합회 규약 제12조3을 보면 임원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인데 회장 선출을 위한건지 아니면 전체 임원을 선택하는 건지 불투명 하다.

ㅇ ㅇㅇㅇ 이사: 관련규정에 원문이 없는데 연합회 선출임원으로는 '회장', '감사'가 있으며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는 선임임원입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러면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회장 선출 플러스 감사 선출까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진행한다라는 소리죠 그러면 규약 임원선출에다가는 나중에라도 분명하게 좀 해줘야 합니다.

ㅇ ㅇㅇㅇ 이사: 그리고 임원 선출을 위하여 이사회 회의를 거쳐 별도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인데 정확하게 하자면 '회장 및 감사 선출관리위원회' '회장 및 감사 선출기구'로 해야할 것 같습니다.

ㅇ ㅇㅇㅇ 이사: 선출임원에 대한 선출방법과 선임임원에 대한 선임방법이 규정

이 규약 내에 나뉘어져 명시되어 있기에 안건에 관련근거를 전부 기재해주거나 차후 회의에는 규약이나 규정들을 배포해야 할 것 같습니다.
ㅇ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저에게 위임 및 규약 개정은 다음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으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논의결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회장에게 위임 및 규약 개정 차기 총회 안건 상정 의결

(폐회선언: 12시 00분)

3 참석자 서명부

○ 재적이사 25명 중 18명

○ 감사 1명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서명부

연번	구 분	성 명	단체/종목	직 위	서 명
1	회 장	김 돈 순	육 상	사무처장	
2	부 회 장 (5)	소 영 선	댄스스포츠	사무처장	
3		조 용 구	배 구	사무처장	
4		함 세 희	수 중	사무처장	세희
5		박 신 흠	하 키	사무처장	
6		정 종 흠	게 이 트 볼	사무처장	
7	사무총장	이 성 진	철 인 3 종	사무처장	
8	이 사 (18)	강 태 영	근 대 5 종	사무처장	
9		김 성 인	근 대 5 종	차 장	
10		김 수 진	조 정	부 장	
11		김 정 미	아이스하키	부 장	
12		김 지 선	요 트	차 장	
13		김 태 주	소프트테니스	사무처장	
14		나 근 주	당 구	사무처장	
15		문 성 은	농 구	사무처장	
16		박 성 욱	태 권 도	사무처장	
17		박 철 성	바이애슬론	사무처장	
18		박 태 웅	빙 상	사무처장	
19		오 주 옥	보 디 빌 딩	사무국장	
20		이 강 민	봅 슬 레 이	사무처장	
21		이 경 영	루 지	사무처장	
22		정 규 오	핸 드 볼	사무처장	
23		최 용 운	합 기 도	사무처장	
24		최 인 수	스 쿼 시	사무처장	
25		한 우 구	배 드 민 턴	사무처장	
26	감 사(2)	최 희 국	복 싱	사무처장	
27		이 새 롬	우 슈	과 장	

4 이사회 사진